

의안번호	2219240
의 퇴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6.6.18.
추 계 번호	26E28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
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2,445억원 등 2027~2029년까지 3년간 총 7,654억원(연평균 2,55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6조의7)	-2,445	-2,550	-2,659	-7,654	-2,55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6조의7제1항(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)	○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% 경감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6조의7제1항(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☐ 개정안의 시행일 및 연장된 적용기한을 고려하여 2027~2029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
- ☐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% 경감하는 제도임
 - 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은 운수종사자에게, 5%는 택시 감차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, 나머지 4%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각각 지급하여야 함
- ☐ 「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른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2,219억원, 2025년 2,248억원(전망) 등으로 나타남

[표 2]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실적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(전망)	2026(전망)
조세지출 실적	1,786	1,835	2,067	2,219	2,248	2,319

자료: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추계방법 및 결과

- 향후 추계기간 동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실적은 「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른 2023~2025년 연평균 조세지출 실적 증가율(4.3%)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- 개정안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2,445억원 등 2027~2029년까지 3년간 총 7,654억원(연평균 2,55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총 5,717억원, 지방소비세는 1,9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06조의7)	-2,445	-2,550	-2,659	-7,654	-2,551
- 부가가치세 (74.7%)	-1,826	-1,905	-1,986	-5,717	-1,906
- 지방소비세 (25.3%)	-619	-645	-673	-1,937	-646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